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9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7.

발 의 자 : 홍성국 · 강선우 · 강준현

민병덕 · 양정숙 · 양향자

윤관석 • 이광재 • 인재근

임종성 · 한병도 · 홍익표

의원(12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·장학단체·과학기술진흥 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·과학기술분야 정 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증진 차원에서 경제·인문사회계정부 출연연구기관에도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경제·인문 연구분야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 단서 중 "제45조의2"를 "제45조의2, 제45조의3"으로 한다.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3(경제·인문분야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50조"를 "제45조의3, 제50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45조(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제45조(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대한 감면) ① -----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. 다만, 제45조의2에 따른 -----제45조의2, 제45조의3---단체는 제외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5조의3(경제·인문분야 연구 지 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저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(생략)
- 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

무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
세법」 제146조제2항에 따른
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
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
제한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
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 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, <u>제50조</u>, 제55조, 제57 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의3 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항· 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76 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82 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제 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

②·③ (생 략)

<u>제45</u> 조의3, 제 <u>50조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